

일시배상금에서 생명보험연금으로의 전환적 논의

- 미국의 Structured Settlement 제도를 중심으로 -

한 병 규*

<차례>

- | | |
|-------------------|---|
| I. 들어가며 | IV. 미국의 생보방식배상연금
(Structured Settlement) |
| II. 한국과 일본의 정기금배상 | |
| III. 주요국의 정기금배상 | V. 마치며 |

주제어: 일시배상금, 정기배상금, 생보방식배상연금, 연금수급권매매거래, 생보방식배상연금, 보호모델법

<국문초록>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의 손해배상금 지급방법은 일시금배상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시금배상방식은 장래의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그 예측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기금배상방식에 비해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하겠다. 이는 피해자의 보상에 있어서 과소보상 또는 과대보상으로 밖에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문제로, 손해배상의 근본이념인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원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인신사고의 일시금배상방식 문제점에 착안하여 주요국가의 배상법리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황은 대체적으로 원고 측에서는 일시금배상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도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금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많았다. 독일은 민법(BGB)과 민사소송법(ZPO)에 정기금배상에 관한 자세한 지급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법규정과는 다르게 실무적으로 정기금배상방식보다는 일시금배상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우리와 일본, 독일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프랑스에서는 판례상으로 다양한 정기금배상 방식이 운용되고 있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특별법상에 불가연동제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는 등 정기금배상에 관한 다양한 운용례를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륙법 체계에서 운용되는 정기금배상의 방식과는 또 다른 형식의 정기금배상 방식인 미국의 생보방식배상연금제도(Structured Settlement)를 소개하여 우리의 도입 시사점을 찾아 보았다. Structured Settlement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15.5.29), 심사개시일(2015.6.5), 게재확정일(2015.6.20).

는 각종 배상사고로 인한 원자(통상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를 채무인수회사가 인수 하여(대부분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 최종적으로 생명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식이다. 동 제도가 미국에서 널리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생명보험회사에만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고, 미국 국내세법을 개정하여 Structured Settlement를 통해 보상금을 수령할 때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세의 면세)하도록 하는 면세정책을 뒷받침 하였기 때문이다. 동 제도는 일시금배상의 단점인 보상금의 조기소진의 문제점과 손해평가의 불확실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언더라이팅과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불가상승을 반영하고 피해자나 유족의 자금계획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제 우리도 기존의 여러 문제를 야기한 일시금배상방식을 탈피하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시도에서 미국의 Structured Settlement 제도는 적절한 시사점을 안긴다.

I. 들어가며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의 손해배상금 지급방법은 일시금배상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시금배상의 방법은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여러 장점을 지니고는 있으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 역시 발생된다. 첫째, 거액의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면서 발생하는 운용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사고로 인해 배상청구의 권리가 발생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는 일시배상금을 선호 하는 게 다반사다. 그러나 배상금은 오랜 기간 부양가족의 생활비 또는 중증후유장애자의 치료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수령한지 몇 년도 채 되지 않아 모두 소진 되는게 현실이다. 이는 비단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될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둘째, 실무상 중증후유장애 피해자의 여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신뢰할만한 통계가 없음에도 법원에서 또는 보상실무에서는 오랫동안 기존의 보상방식에 따른 일시금배상을 행하고 있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과 같은 중증후유장애자의 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장래에 발생하게 될 치료비와 간호비는 평균여명에 기초한 의료인의 감정결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일시금배상방식은 장래의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그 예측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정기금배상방식에 비해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하겠다. 이는 결국 피해자의 보상에 있어서 과소보상 또는 과대보

상으로 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로 손해배상의 근본이념인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원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신사고의 일시금배상의 문제점에 착안하였을 때, 이제는 맹목적으로 일시금배상을 선호할 일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정기금방식의 배상법리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가 서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거액의 보상금 수령 후 조기소진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의 비화, 중증 후유장애자와 같은 불확실한 여명예측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의 문제는, 이는 사회적·의학적 문제로 귀결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이다. 본고에서는 상기의 문제점들을 기초로 정기금배상에 대한 우리와 주요국의 동향과약과 더불어 법규정과 실무례를 살펴본 다음, 정기금배상제도의 일환으로 현재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Structured Settlement’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한국과 일본의 정기금배상

1. 한국의 동향

(1) 관련규정 및 약관

우리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를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해석에 따라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정기금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개별 손해배상 항목 중 ‘재산이외의 손해(위자료 등)’ 즉 비재산적 손해가 아닌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적 해석의 견해¹⁾와 이에 국한하지 않고 인신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손해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재산적 손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일반적 해석의 견해²⁾로 그 견해가 나뉜다. 이에 대해 다수의

1) 김기선, 「한국채권법각칙」, 박영사, 1986, 457면;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754면

2) 박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2; 박준서, 「주식민법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322면

견해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정기금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³⁾ 또한 동법 725조에서는 “중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어서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중신정기금형식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서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뀔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액 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기금판결을 명한 이후 기초사실의 변경이 생겨 추가적인 소를 구할 때 전소의 기판력에 반하는지에 대한 종래의 실무적 분쟁 양상에 대하여 기판력을 배제시키고 판결의 변경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⁴⁾

손해배상의 실무적인 운용례를 든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피재근로자의 보상에 있어서 산업재해보험법에서는 사망으로 인한 급여인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경우에 일시금지급방식과 정기금지급방식(연금)으로 혼합되어 있다.⁵⁾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액을 일정 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⁶⁾ 그런데 실무적으로 손해보험회사가 보상을 함에 있어서 정기금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2)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에서는 초기 손해배상의 방법에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기금지급청

3) 오히려 실무상 위자료는 정기금배상으로 명할 필요성이 적은 반면에 재산상의 손해 특히 향후치료비와 개호비(간호비) 손해의 경우에는 정기금배상으로 명할 필요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한국사법행정학회, 258면

4) 정기금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발생되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하게 된다면 전소 판결에 대해 원고나 피고 모두 위 규정에 의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는 정기금의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하는 변경도 가능한 것이다. 이연갑, “정기금배상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56호, 한국민사법학회, 2011. 12, 370면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2조

6) 자동차보험표준약관(2014. 6. 개정) 제30조 7항

구권과 일시금지급청구권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⁷⁾고 하였으나, 이후 양 당사자 일방이 일시금 또는 정기금으로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변경되었다.⁸⁾ 이러한 입장은 대다수의 피해자(원고)는 사고초기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자 일시금배상 청구를 선호하는 것에 반하여 자칫 신체감정 과정상 과잉배상이 일어날 우려를 견제하는 방편에서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후유장해의 존속기간이나 여명의 단축 정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금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⁹⁾¹⁰⁾ 하여 자칫 근거가 부족한 감정인의 신체감정서상의 실무적 오류로 일어날 수 있는 고액배상의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시금방식과 정기금방식의 혼용의 지급을 명하기도 한다. 원고가 일시금으로 일실수익 손해를 청구함에 있어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은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그 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 상당의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¹¹⁾고 하여 법원의 자유 재량성을 보다 강화¹²⁾하였다.

7) 대법원 1968.4. 23선고 68다 171 판결

8)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 621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 1032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 19039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 36628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 26673호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 39368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보조용구비용 또는 간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도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이의 다수.

9)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 51874 판결

10) 위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대한 한계를 구체화 한 판결로 가능하면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당사자가 선택한 지급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법원이 재량권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례의 태도가 당사자의 선택권에 더욱 충실하게 변화했다”는 견해도 있다. 최은순, “신체사고에서의 정기금 배상” 「외법논집」 제3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8. 467-468면

11)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12)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

그러나 특별한 사정¹³⁾이 없는 한 감정인이 행한 기대여명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¹⁴⁾고 하여 의료인의 판단한 신체감정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입장이다.

(3) 실무에서의 정금배상

소송에 의하지 않고 소송외의 배상실무에 있어서 정금배상은, 사고로 인해 사망한 亡人의 ‘사망시의 일실수익의 산정의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자의 일실수익 산정, 간호비(가정간호비), 장래 발생될 치료비(향후 치료비) 등은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보험회사가 제시한 통상의 합의금(보험금)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¹⁵⁾ 보험회사의 합의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은 이후 소송이외의 대체적 해결제도라 할 수 있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증장애의 일실수익, 간호비, 향후치료비 등의 산정의 문제는 현재 우리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는 위 해당사건의 분쟁의 원인이 의료적 감정(기대여명 예측, 간호인의 수, 향후 보장구 등의 필요의 문제 등)의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이들 기관의 민원 담당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신청인(피해자)과 피신청인(보험회사)간의 주장

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애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 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13)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59105 판결 “원심이 기대여명을 판단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란 제목의 서적에서 들고 있는 ‘기질적 뇌증후군을 동반한 거동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여명’은 미국 Eyman 등이 1984년부터 1987년 사이에 미국의 ‘심한 지능저하로 인한 장애인’의 여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위 서적의 저자가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계산해 낸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위 제1심의 각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원고의 기대여명을 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14)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 72678 판결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추락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15)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지급기준편의 가정간호비의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약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식물인간환자’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매우 제한적으로 가정간호비를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2014. 6. 30 개정)

의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2. 일본의 동향

(1) 법률상의 규정

일본 민법 417조¹⁶⁾에서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그렇다고 정기금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또한 없다. 한편 민사소송법에서는 정기금배상 자체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금배상을 제안하는 동법117조¹⁷⁾의 규정으로 인하여 정기금배상 방식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¹⁸⁾

(2) 판례의 동향

일본에서는 대체적으로 원고측에서는 일시금배상을 청구하고 법원도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금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많고, 정기금배상의 판결은 극히 적다. 주로 논제가 되는 것은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망인의 상속인이 일시금배상으로 청구했을 때 법원의 재량으로 정기금배상으로 명할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¹⁹⁾ 최고재판소의 입장을 반영하여 하급심재판에서도 원고측에서 일시금배상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정기금배상 판결을 주문하는 판결은 극히 드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의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제117조의한

16) 일본 민법 제417조: 손해배상은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금전으로써 그 액을 정한다.

17) 일본 민사소송법 제117조(정기금에 의한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 ① 구두변론 종결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기금에 의한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정기금에 의한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구두 변론종결 후에, 후유장해의 정도, 임금수준 그 밖의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의 제기일 이후에 지불기한이 도래하는 정기금에 관계된 부분에 한한다. ② 전항의 소는, 제1심 재판소의 관할에 전속한다.

18) 세부적으로 어떠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정기금배상을 인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판례와 학설이 나뉘고 있다. 대체로 후유장해 피해자의 장래 간호비용(개호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없지만, 사망피해자의 일실이익 손해는 부정설이 주류이며, 후유장해 피해자의 일실이익 손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에 대해서는 佐野 誠, “定期金賠償の現状と課題”, 「生存余命と定期金賠償」, 自動車保険ジャーナル, 2005, 105頁

19) 最高裁 1987(昭和 62). 2. 6. 民集 150号 79頁.

정기금 판결의 변경의 소가 신설되면서 하급심에서 정기금배상을 인정하는 판결례²⁰⁾도 등장하고 있다.

(3) 실무에 있어서 정기금배상의 문제

일본의 자동차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강제보험인 자배책보험에서는 정기금지급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²¹⁾ 그러나 임의보험에서는 중증후유장해(후유장해 1급 3호 및 4호)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장래의 개호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정기금지급을 인정하고 있다.²²⁾ 한편 일본의 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²³⁾는 일시금배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증 교통사고 환자의 보상금을 산정한다.²⁴⁾ 그러나 여기에서도 여명예측이 불확실한 '뇌손상에 의한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에는 여러 사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의 특성상 피해자 측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하여 일시금배상으로 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일본 보험회사의 실무는 일시금배상으로 보상업무를 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여명예측이 비교적 예상 가능한 경우'와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등)'로 구분하여 대응한다. '예명예측이 비교적 예상 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여명연수를 사용하여 일시금배상을 권유하고, '여명예측이 불확실한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일시금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정기금배상의 합리성과 피해자에 있어서 유리한 점등을 설명하여 정기금배상을 지급받게끔 유도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20) 東京地判 2003(平成 15). 7. 24. 判例タイムズ 1135号 184頁; 東京高判 2003(平成 15). 7. 29. 判例時報 1838号 69頁.

21) 자배책보험의 손해조정요항에 기초한 실무처리로서는 정기금지급항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의해 정기금배상을 명받은 경우에는 이론상 정기금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佐野 誠, “人身事故損害賠償における定期金拂いについての一考察”, 「保險學雜誌」 第570号, 2000. 9, 135頁

22) 佐野 誠, “人身事故損害賠償における定期金拂いについての一考察”, 「保險學雜誌」 第570号, 2000. 9, 136頁

23) 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는 1974년에 발족한 교통사고판정위원회로 출범하여 1978년부터 재단법인으로 되어있다. 이 법인은 교통사고에 관한 민사 분쟁에 대해서 재판외적 분쟁해결기관(ADR)으로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법률상담, 화해의 알선 및 심사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http://www.jcstad.or.jp/about/index.htm>> 2015. 4. 3 검색

24) 이하의 일본 보상실무에 대해서는 吉澤卓哉, “無能力者の扶養確保のための定期金賠償”, 「損害保險研究」 57卷 1号,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1995. 5, 82-85頁

응하지 않고 일시금배상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금배상을 지급하게 된다. 실무상 보험회사에서는 개별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정 여명연수에 근거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Ⅲ. 주요국의 정기금배상

1. 대륙법 국가의 개관

(1) 독일

대륙법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정기금배상방식이 원칙이다. 일시금배상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된다. 특히 독일은 법률상 정기금배상에 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는 국가이다. 독일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과 독일민사소송법(Zivilprozessrecht; ZPO)은 정기금배상원칙을 고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 독일민법 제843조²⁵⁾에서 제1항은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 된 때 또는 그 수요의 증대가 생겼을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기금의 지급으로 급부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방식 또는 금액을 할 것인지는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정하여 채무자(배상의무자)의 제반사정을 고려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동조 제3항에서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는 정기

25) 독일 민법 § 843 (Geldrente oder Kapitalabfindung 정기금 또는 원본일시금)

- (1) Wird infolge einer Verletzung des Körpers oder der Gesundheit die Erwerbsfähigkeit des Verletzten aufgehoben oder gemindert oder tritt eine Vermehrung seiner Bedürfnisse ein, so ist dem Verletzten durch Entrichtung einer Geldrente Schadensersatz zu leisten.
- (2) Auf die Rente finden die Vorschriften des § 760 Anwendung. Ob, in welcher Art und für welchen Betrag der Ersatzpflichtige Sicherheit zu leisten hat, bestimmt sich nach den Umständen.
- (3) Statt der Rente kann der Verletzte eine Abfindung in Kapital verlangen, wenn ein wichtiger Grund vorliegt.
- (4) Der Anspruch wird nicht dadurch ausgeschlossen, dass ein anderer dem Verletzten Unterhalt zu gewähren hat.

독일민법은 <<http://www.gesetze-im-internet.de/>>

금지급을 대신하여 원본에 따라 일시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²⁶⁾는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 사유라 할 것이다. ‘중대한 사유’는 예컨대, 일시금의 지급을 통해 피해자의 건강회복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기금지급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젊은 피해자가 일시금지급을 통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립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피해자 측의 사정을 최대한 감안하고 있다. 그렇다고 채무자의 항변사유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배상의무자)의 사정으로는 해외근무나 잦은 이주에 따라 정기금지급이 특별히 곤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유’라 본다.

독일민법상의 정기금배상원칙과 균형을 맞추고 있는 독일민사소송법 조문²⁷⁾은, 정기금지급을 전제로 한 회귀적 급부를 요구하는 제도(독일민사소송법 258조), 변경재판의 제도(독일 민사소송법 323조), 담보제공의 추가청구소송제도(독일민사소송법 324조) 등을 정하고 있다. 독일민사소송법 제258조는 “회귀적급부(wiederkehrende Leistung)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비로소 기한이 도래하는 급부를 이유로 할 때에도 장래급부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26) 이하의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Palandt/Thomas, BGB 62. Aufl., 2003, 843Rn. 20ff.

27) ZPO § 258 (Klage auf wiederkehrende Leistungen: 회귀적 급부를 요구하는 소송)

Bei wiederkehrenden Leistungen kann auch wegen der erst nach Erlass des Urteils fällig werdenden Leistungen Klage auf künftige Entrichtung erhoben werden.

§ 323 (Abänderung von Urteilen: 변경의 소)

(1) Enthält ein Urteil eine Verpflichtung zu künftig fällig werdenden wiederkehrenden Leistungen, kann jeder Teil die Abänderung beantragen. Die Klage ist nur zulässig, wenn der Kläger Tatsachen vorträgt, aus denen sich eine wesentliche Veränderung der der Entscheidung zugrunde liegenden tatsächlichen oder rechtlichen Verhältnisse ergibt.

(2) Die Klage kann nur auf Gründe gestützt werden, die nach Schluss der Tatsachenverhandlung des vorausgegangenen Verfahrens entstanden sind und deren Geltendmachung durch Einspruch nicht möglich ist oder war.

(3) Die Abänderung ist zulässig für die Zeit ab Rechtshängigkeit der Klage.

(4) Liegt eine wesentliche Veränderung der tatsächlichen oder rechtlichen Verhältnisse vor, ist die Entscheidung unter Wahrung ihrer Grundlagen anzupassen.

§ 324 (Nachforderungsklage zur Sicherheitsleistung : 담보제공의 추가 청구소송)

Ist bei einer nach den §§ 843 bis 845 oder §§ 1569 bis 1586b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erfolgten Verurteilung zur Entrichtung einer Geldrente nicht auf Sicherheitsleistung erkannt, so kann der Berechtigte gleichwohl Sicherheitsleistung verlangen, wenn sich die Vermögensverhältnisse des Verpflichteten erheblich verschlechtert haben; unter der gleichen Voraussetzung kann er eine Erhöhung der in dem Urteil bestimmten Sicherheit verlangen.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여 이 조문에 따라 장래의 회귀적 급부청구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를 가질 필요 없이 소 제기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신속한 채권집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행시기 마다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하여 소송경제상의 효과를 갖는다.²⁸⁾ 또한 동법 제323조 제1항은 “장래 기한이 도래하는 회귀적 급부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 급부를 명하는 판결에 대하여 그 급부의 금액 또는 변제기간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 사정(Verhältnisse)에 현저한(wesentlich)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양 당사자는 소로써 판결에 상응하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앞서 언급한 258조에 의한 판결의 변경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취지로 동법 제324조는 “민법 제843조 내지 제845조 또는 제1569 내지 제1586b조에 의해 정기금급부를 명하는 판결에서 담보의 제공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배상의무자의 재산 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요건을 토대로 판결에서 정해진 담보의 증액 또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258조에 의한 판결에서 정해진 채권자의 담보에 대하여 추가적인 담보의 제공과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이다.²⁹⁾ 이처럼 독일은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정기금배상을 위한 조문을 자세하게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법률규정에 따라 정기금배상을 명하는 경우보다 재판외의 합의에 따라 일시금배상으로 이뤄 지는게 더 많다고 한다.³⁰⁾

(2)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상에 정기금배상에 관한 법률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시금배상 또는 정기금 배상, 어느 방법으로 지급을 명할 것이냐는 문제는 사실심 법관의 재량에 속한다.³¹⁾ 따

28) Musielak/Foerste, ZPO 3. Aufl., 2002, §258 Rn. 1

29) Palandt/Thomas, a.a.O, (Fn. 17) §843 Rn. 16.

30) 피해자 측에 대립한 가해자 측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일시금배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원한다면 당사자 간의 공증에 따른 “일시금회해(Kapitalabfindungsvergleich)는 적법한 것으로 재판 외 회해의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시금배상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MünchKommBGB/Wagner, 4. Aufl., 2004, Rdnr. 749

31) Cass. Civ. 2e. 29. 4. 1994. Resp. Ass. 1994의 내용을 이연갑, “정기금배상에 관한 소고”, 「민사법

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정기금방식, 일시금방식, 또는 그 변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판례상 확립되어 있다.³²⁾ 법원은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신체사고와 같이 장애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손해의 발생이 지속되는 기간이 불확정적인 경우에 종신통기금 또는 일정기간까지의 정기금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³³⁾ 프랑스 역시 전술한 다른 국가와 같이 정기금배상판결이 확정된 후 사정변경에 의해 기판력이 반하는 지 여부가 쟁점화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특이한 점은 가피해자간 손해의 형평성에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는 프랑스 법원의 취지가 엇 보인다. 예컨대 일시금이든 정기금이든 판결확정 후에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청구하는 것은 “원래의 판결에서 그러한 권한을 유보하지 않는 한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새로운 손해이므로 전소의 소송물의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³⁴⁾

또한 프랑스는 물가연동제(Indexation)에 의한 정기배상금 방식이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특정 개별법(1974. 12. 27 제정, 법률 제74-118호)에서는 일정의 조건을 해당하는 정기금배상에 대해서는 물가연동 조항을 강제하는 법률을 정하고 있다.³⁵⁾

프랑스는 법률상으로 정기금배상에 다양한 조문을 마련한 독일보다도 판례법상으로 정기금배상방식을 명하거나 변경판결을 인정하기가 용이하여,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정기금배상방식을 채용하는 비율이 많다.³⁶⁾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후술하는 미국식의 Structured Settlement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학」 제56호, 한국민사법학회, 2011. 12, 372면에서 재인용

32) 吉本智信·佐野 誠, 「生存余命と定期金賠償」, 自動車保險ジャーナル, 2005, 98頁

33) 楠本安雄 「人身損害賠償論」, 日本評論社, 1984, 192頁의 내용을 최은순, “신체사고에서의 정기금 배상” 『외법논집』 제3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8, 479면에서 재인용

34) 이연갑, “정기금배상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56호, 한국민사법학회, 2011. 12, 372면

35) 이제도에 의하면 교통사고에 의한 정기금배상은 ‘판결’이나 ‘화해’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보장법 L 제455조에서 규정하는 물가연동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재평가된다. 吉本智信·佐野 誠, 「生存余命と定期金賠償」, 自動車保險ジャーナル, 2005, 120頁

36) 藤村和夫, 「交通事故賠償理論の新展開」, 日本評論社, 1998, 127頁의 내용을 吉本智信·佐野 誠, 「生存余命と定期金賠償」, 自動車保險ジャーナル, 2005, 99頁에서 재인용

2. 영미법 국가의 개관

영미법 국가에서는 관습법에 기초한 일시금지급 방식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근래 들어 호주, 영국, 캐나다 등에서 미국에서와 같은 Structured Settlements에 의한 정기금지급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영국과 호주에 대해서만 다루고 미국의 정기금배상의 동향, 특히 Structured Settlements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IV장(미국의 생보방식배상연금보험-Structured Settlement)에서 주요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1) 영국

영국에서는 1989년에 미국식의 Structured Settlements를 도입하였다.³⁷⁾ 또한 1992년 영국법률위원회에서는 일시금배상보다 정기금배상 방식이 피해자와 손해보험회사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하였다.³⁸⁾ 영국의 Structured Settlements 연금계약은 Damages Act 1996 및 Policy Holder Protection Act 1975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Policy Holder Protection Act 1975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보호위원회(Policy Holder Protection Board, PPB)를 구성하여 보험회사의 파산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액의 90%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³⁹⁾ 아울러 Damages Act 1996 에 의하여 Structured Settlements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0%까지 보호된다.⁴⁰⁾ 미국과 다르게 Structured Settlements를 시행함에 있어서 생명보험회사의 재무 신용등급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Structured Settlements와 생명보험회사의 재무등급에 대해서는 후술함) 미국과 영국에서의 Structured Settlements 제도는 그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데⁴¹⁾, ① 미국제도는 다양한 지급케이스에 따라 제도가 운용되는 반면에, 영

37) The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 Structured Settlement Working Party, 15 Oct. 2000, pp.6,18

38) 吉本智信·佐野 誠, 「生存余命と定期金賠償」, 自動車保険ジャーナル, 2005, 96頁

39) Policyholders Protection Act 1975 Section 10 and 1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75/75/contents>> 2015. 5. 8 검색

40) Damage Act 1996, Section 4, (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6/48/section/4>>

41) 영국과 미국의 Structured Settlements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佐野 誠, “人身事故損害賠償におけ

국은 중상환자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②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미국에서는 매년 정률식으로 정기금을 증액시키고 있는 것에 비해 영국에서는 물가지수에 연동하는 인플레이슬라이드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원래 영국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정기금배상 판결을 명할 수 없다는 법률규정이 있었으나,⁴²⁾ 2003년 Court Act 2003(법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 없이도 정기금배상의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동법은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2008년부터 법원에서 정기금배상을 채용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정기금배상에 대해 미국식의 Structured Settlements로 불렸지만, 동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Periodical Payment' 로 불린다.⁴³⁾

(2) 호주⁴⁴⁾

호주에서의 정기금방식은 미국식의 Structured Settlements와 법원명령에 의한 'Structured Order' 로 구분된다. 전자의 Structured Settlements는 개인의 인적사고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정기금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료과실, 운동 사고, 자동차사고, 공공기간배상책임(Public liability), 제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 등이 있으며 산업재해사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후자의 'Structured Order'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어도 법원의 명령에 의해 정기금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주에서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Structured Settlements가 이용되는 것은 드물다고 한다. Structured Settlements 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로는 ① 배상청구자 입장에서 Structured Settlements 가 소득세 면세혜택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투자옵션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점, ② 손해배상법의 개정으로 인한 할인율의 문제로 Structured Settlements는 일시금방식에 비하여 고비용이 발생하는 점⁴⁵⁾, ③ 생명

る定期金拂いについての一考察', 「保險學雜誌」 第570号,2000. 9, 149頁

42) Damage Act 1996, Section 2, (1)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6/48/section/2/>>

43) Court Act 2003 Section 100 - [Legislation.gov.uk](http://www.legislation.gov.uk)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3/39/section/100>> 2015. 5. 9 검색

44) 이하 호주의 동향에 대해서는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보험연구원, 2012. 8, 61-65면

45) 예컨대, “어떤 손해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20년간 매주 \$6,000의 치료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재가치로 \$4,578,882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20년간 매주 지급되는

보험회사는 배상청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물가연동형종신연금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IV. 미국의 생보방식배상연금(Structured Settlement)⁴⁶⁾

1. 개념

‘Structured Settlements’는 상해나 질병으로 후유장애를 남기거나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 결정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또는 그 화해로써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의 면세의 대상으로서 규정되어있는 정기금배상(Periodic Payments)의 재무계약 또는 보험계약(연금)⁴⁷⁾, 또는 근로자재해사고의 보상금으로서의 정기금배상의 계약⁴⁸⁾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하면, 재해사고로 인한 인신사고 피해자의 배상손해가 확정된 경우에 가해자(손해보험회사)의 일시배상금(보험금)을 원자로 하여, 면세혜택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일시배상금을 정기금배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후유장애를 남거나(질병포함)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금의 반액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남은 반액은 Structured Settlements 회사를 경유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연금구입에 사용된다. 이러한 정기금(연금)이 그 가격과 설계

\$6,000에 대하여 3%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4,727,400의 일시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5%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3,998,400의 일시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구조화 지급방식 하에서의 연금을 구입하여 주는 것보다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조재란·이기형·정인영,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보험연구원, 2012. 8, 64-65면

46) 필자는 ‘Structured Settlement’에 대해 ‘생보방식배상연금’으로 칭했다. 국내 선행연구물을 분석해보면 ① ‘구조화된 화해’로 (최은순, “신체사고에서의 정기금 배상 「외법논집」 제3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8, 498면) ② ‘구조화지급방식’으로 (조재란·이기형·정인영,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보험연구원, 2012. 8, 47면) 표현되는 등 원어에 입각한 해석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는 일반 보험소비자가 이 상품에 대해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운 감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일본의 ‘佐野 誠’는 ‘생보연금방식(生保年金方式)’로 (吉本智信·佐野 誠, 「生存余命と定期金賠償」, 自動車保険ジャーナル, 2005, 7頁) 표현하는 것에 영감을 얻어 ‘생보방식배상연금(生保方式賠償年金)’으로 응용 하였으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부족하므로 이하에서는 원 표현인 ‘Structured Settlement’라 기재한다.

47)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Section 104 (a) (2) (26 U.S.C. § 104 (a) (2))

48)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Section 104 (a) (1) (26 U.S.C. § 104 (a) (1))

의 전문성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에 의한 Structured Settlements 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국채에 투자하는 신탁제도 등이 있다.⁴⁹⁾

연혁적으로, 원래 영미법에서 인신사고의 손해배상은 일시금배상방식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정기금형태의 배상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생산물배상책임소송(Product Liability 소송)이 잇따르고 가해자에게 고액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최초 정기금배상방식이 미국사회에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캐나다 법정에서 1968년의 Thalidomide 사건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정기금배상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⁵⁰⁾ 같은 판례법 국가인 호주, 영국, 미국 등으로 전파되어 현재는 법정 불법행위법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에서 논하는 Structured Settlement 방식이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된 것은 미국의 조세법인 내국세입규칙(Internal Revenue Code, IRC)의 개정으로 세제상의 혜택이 확정된 1970년대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⁵¹⁾ Structured Settlement은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배우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거나 또는 본인이 후유장해를 입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고, 1970년~ 8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⁵²⁾

Structured Settlements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배상책임을 부보한 손해보험회사가 아니라, 연금보험자로서의 생명보험회사와 브로커라 할 수 있다. 즉 Structured Settlements는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종신연금에 배상금을 결합한 복합상품이며, 생명보험회사에 있어서 이 제도는 연금사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⁵³⁾

49) 李洪茂, “アメリカにおける人身事故の損害賠償金としてのストラクチャード・セトルメント”, 「保險學保險法學の課題と展望—大谷孝一博士古稀記念」, 成文堂, 2011.12, 801-802頁

50) Ryan JA Jr, Harbin RF. Structured settlements. In: Brackenridge RDC, Elder WJ, editors, Medical Selection of Life Risks. New York, Stockton Press, 1998, pp. 173-180.

51) Ryan JA Jr, Harbin RF. Structured settlements. In: Brackenridge RDC, Elder WJ, editors, Medical Selection of Life Risks. New York, Stockton Press, 1998, p. 174

52) Jeremy Babener, “Structured Settlements and Single-claimant Qualified Settlement Funds : Regulating in Accordance with Structured Settlements History”,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2010, p. 7.

53) 吉本智信·佐野 誠, 「生存余命と定期金賠償」, 自動車保險ジャーナル, 2005, 95頁

2. 도입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은 일시배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손해배상금이 정기배상금보다는 일시배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은⁵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이행확보의 염려에 기인할 수 있다. 정기금배상에 의하면 가해자측은 장기간에 걸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가해자측의 배상자력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이행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수 있다. 또한 분쟁해결의 장기화 또한 그 원인이라 하겠다. 피해자가 일시금방식으로 배상을 받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지만 정기금방식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가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가해자가 손해보험회사에 배상책임담보를 가입한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배상실무의 의학적인 문제에서도 정기금배상보다는 일시금배상방식이 선호된다. 예컨대 중증 후유장애나 식물인간의 피해자인 경우에 재판실무에서는 생명표에 의해 여명을 예측하는데, 피해자입장에서는 실제의 명확한 여명예측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보다는 생명표에 의한 예측을 통한 손해배상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시금배상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논리로 ‘하늘에 있는 두 마리보다 손안에 있는 한 마리’라는 말처럼, 일단 배상금을 전액 확보한다는 심정에 기초한 보상심리가 나타나고, 일시금배상을 지급받으면 장래에 지출하게 될 간호비용의 차액을 자유롭게 자금운용에도 융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기금방식을 기피하고 일시금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보상심리는 손해배상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의 근본이념과는 배치된다고 본다.⁵⁵⁾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볼 때, 미국식의 Structured Settlement는 피해자의 보상욕구를 완벽히

54) 이하의 정기금배상방식이 선호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佐野 誠, “生命保險ビジネスとして Structured Settlements”, 生命保險論集 第159号, 2007. 6, 4-5頁

55) 일본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관해 자주 인용되는 판결례를 보면, 最高裁 1964. 6. 24. 民集 18卷 5号 874頁에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 말하는 문언을 쓴 것은, 일실이익의 손해액의 개연성에 의심이 있을 때는 “피해자에게 있어서 소극적인 산정방법”을 쓴다면, “보다 객관성 있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고, 손실의 공평한 분담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다 객관성 있는 금액’은 소극적인 산정에 따른 일시금배상보다 정기금배상의 편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정기금배상론의 각설에 기초적인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勅使川原 和彦, “定期金賠償請求訴訟と處分權主義”, 『早稲田法學』 第81卷 第4号, 早稲田大學法學會, 2006. 113頁

충족할 수는 없겠으나, 그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본다. Structured Settlement⁵⁶⁾은 물가슬라이드제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서 일시금배상의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용이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매년 연금형태의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시금의 조기낭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결과⁵⁷⁾에 의하면 사고 피해자의 25% ~ 30%는 일시금으로서 지급받은 배상금을 수령 후 2개월 만에 소비하고, 5년 이내에 소비해버리는 피해자는 전체의 90%에 달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시금으로서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컨대 피해자가 아이라든지, 재산 관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낭비를 안 하더라도 초보자 입장에서 자금운용을 현명하게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고 한다. 더불어 Structured Settlement은 일시금배상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일시금배상의 경우에 운용이익에 과세가 부과되지만 Structured Settlement에 의한 정기금(연금)수령하게 되면 운용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혜택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Structured Settlement에 의해 정기금(연금)을 수령 받는 피해자가 경제적 인 여러 이유 등으로 일시금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시금배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이러한 거래를 ‘팩토링거래-Factoring Transactions’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함.) 이 제도가 대중화됨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제혜택, 법규, 생명보험업계나 중개자들의 노력을 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기의 성장요인을 중심으로 Structured Settlement의 대해 고찰해본다.

3. Structured Settlement 실무

(1) 제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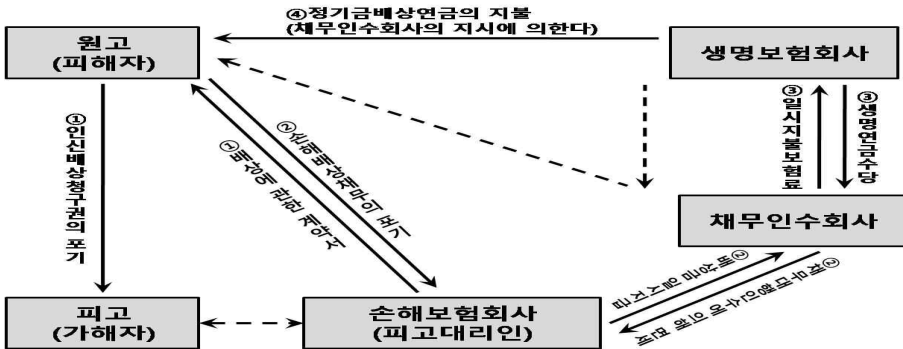
미국의 인신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Structured Settlement은 다양한 운용례를 보인다. 현재 교통사고나 근로자재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중증후유장해자의 배상

56) 이하의 Structured Settlement의 장점에 대해서는 佐野 誠, “人身事故損害賠償における定期金拂いについての一考察”, 『保險學雜誌』 第570号, 2000. 9, 136頁

57) The Rutter Group Ltd., From Flahavan, Rea, Kelly & Tener, “California Price: Personal Injury” (TRG 1992) Ch. 4 의 내용을 佐野 誠, “人身事故損害賠償における定期金拂いについての一考察”, 『保險學雜誌』 第570号, 2000. 9, 144頁에서 재인용

문제부터 출산시 의료 과실로 인한 뇌손상에 의한 뇌성소아 마비 등의 보상문제 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건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⁵⁸⁾

<표-1> Structured Settlement 계약체결개요⁵⁹⁾



1) 정기배상금의 합의(계약의 체결)

원고(피해자)와 피고(가해자)와의 사이에 배상청구권포기조항이 삽입된 Structured Settlement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피고 대리인인 손해보험회사), 채무인수회사간의 삼자계약이다. 통상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 변호사를 고용하여 업무처리에 임하는 것이 보통이며, 원고는 채무인수회사가 생명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피고(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⁶⁰⁾ 합의 시 정기금(연금)의 분할 지급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단서조항을 정한다. 사고로 지출한 비용(기발생 치료비, 변호사비용)과 당분간의 필요경비 등은 일시금지급으로 지급받고, 향후에 발생하게 될 간호비용, 휴업손해와 같은 장래비용에 대해서는 정기금(연금)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정기금의 증

58) Singer Richard B & Schmidt Craig J. "Structured settlement annuities, part 2: mortality experience 1967 -95 and the estimation of life expectancy in the presence of excess mortality",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 2000. p 133.

59) Gregg D. Polsky & Brant J. Hellwig, "TAXING STRUCTURED SETTLEMENTS",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 [51:39], Issue 1, January 2010, p. 42

60) Gregg D. Polsky & Brant J. Hellwig, "TAXING STRUCTURED SETTLEMENTS",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 [51:39], Issue 1, January 2010, p. 41

액조항을 넣기도 한다.⁶¹⁾

2) 채무인수회사의 배상채무 인수

손해보험회사(피고대리인)는 내국세입규칙 제130조에 따라, 적격채무인수회사(대부분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 (Qualified Assignee)에 Structured Settlement의 원자가 되는 일시불 보험료 상당의 금액을 배상금으로서 지급한다. 그로인해 손해보험회사는 배상채무를 채무인수회사에 양도하게 되고, 그 즉시 손해보험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사건을 종료한다. 동시에 원고의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배상권은 포기되고, 대신 채무인수회사가 원고에 대한 배상채무를 지게 된다.⁶²⁾ 그러나 원래 이와 같은 시스템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정기금을 지급하기로 한 연금보험회사(annuity issuer)가 파산하게 되면, 가해자의 배상책임보험회사는 배상책임 의무를 다시금 지게 되는 구조였으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배상책임보험회사는 배상채무를 제3자(인수인; assignee)에게 양도하기에 이른다.⁶³⁾ 채무인수제도는 널리 통용되고 이후 제도상으로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채무인수를 적격채무인수(qualified assignment)라 한다.⁶⁴⁾ 전술한 대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채무인수는 연금보험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즉 연금을 인수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자회사에 의해 가해자의 배상책임의무도 지게 되는 것이다.⁶⁵⁾ 실무에서 사용되는 채무인수계약서는 업체단체인 NSSTA(National

61) 佐野 誠, “人身事故損害賠償における定期金拂いについての一考察”, 『保險學雜誌』 第570号, 2000. 9, 139頁

62) Gregg D. Polsky & Brant J. Hellwig, “TAXING STRUCTURED SETTLEMENTS”,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 [51:39], Issue 1, January 2010, p. 42

63) ‘Structured Settlement’ 사업 초기에는 이러한 채무인수제도가 없었다. 때문에 연금보험자인 생명보험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손해보험회사는 배상책임을 다시금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러한 구조는 ‘Structured Settlement’ 방식의 효용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채무인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채용된 방식이며, 현재는 대부분의 Structured Settlement 방식에서 채무인수가 행해지고 있다. 吉本智信 佐野 誠, 『生存余命と定期金賠償』, 自動車保險ジャーナル, 2005, 138頁

64) 佐野 誠, “人身事故損害賠償における定期金拂いについての一考察”, 『保險學雜誌』 第570号, 2000. 9, 139頁

65) 채무인수에 대한 수수료(assignment fee)는 통상 500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채무인수 수수료가 가해자 배상책임을 인수(부담)하는 비용으로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지만 이 비용은 일종의 사무처리비용 정도이기 때문에 저렴한 것이고, 모회사인 생명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연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채무인수’라는 계약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吉本智

Structured Settlement Trade Association)의 표준계약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⁶⁶⁾

3) 채무인수회사의 연금계약의 구입

채무인수회사는 배상채무의 이행을 위해, 연금보험회사(annuity issuer)와 연금 계약을 체결한다. 채무인수회사는 전술한대로 대부분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이지만, 생명보험회사에 연금계약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불 보험료를 지불한다.⁶⁷⁾ 이 보험료의 자금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인수받은 보험금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의 부담은 가해자의 손해보험회사가 그대로 연금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⁸⁾

4)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지급

원래 생명보험회사는 연금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연금보험금을 채무인수회사에 지급하고, 채무인수회사가 생명보험회사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채자 원고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경우는 생명보험회사가 직접 원고(피해자)에게 연금보험금을 지급한다.⁶⁹⁾ 이때 피해자의 주소확인, 생존확인여부, 연금지급의 세부적 수속 등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가 맡는다.⁷⁰⁾

(2) 제도의 운용례

아래 <표-2>의 운용례는 8세의 어린아이의 실사례를 도표화한 것으로, 3가지

信·佐野 誠, 「生存余命と定期金賠償」, 自動車保険ジャーナル, 2005, 138頁

66) 吉本智信·佐野 誠, 「生存余命と定期金賠償」, 自動車保険ジャーナル, 2005, 139頁

67) Gregg D. Polsky & Brant J. Hellwig, "TAXING STRUCTURED SETTLEMENTS",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 [51:39], Issue 1, January 2010, p. 43

68) 이 경우, 미국 내국세입규칙(IRC) 제130조에 의해 채무인수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그 금액이 연금보험료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 吉本智信·佐野 誠, 「生存余命と定期金賠償」, 自動車保険ジャーナル, 2005, 139頁

69) Gregg D. Polsky & Brant J. Hellwig, "TAXING STRUCTURED SETTLEMENTS",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 [51:39], Issue 1, January 2010, p. 43

70) 佐野 誠, 「人身事故損害賠償における定期金拂いについての一考察」, 「保險學雜誌」 第570号, 2000. 9, 141頁

의 정기금배상방식과 4가지의 일시금배상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생명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100만 달러, 종신의 예정지급액은 750만 달러로 설계된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Structured Settlement는 피해자나 유족의 자금계획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표- 2> Structured Settlement의 운용례⁷¹⁾

수급인 : 8세(男)	보험료	보증지급액	상정지급액
계약체결 후 17년간 : 월 \$1,500의 정기금	\$185,993	\$321,000	\$321,000
수급인 25세 도달로부터 종신: 월 \$4,100의 정기금 (30년간은 보증) (정기금액은 매년 3% 증가함)	\$310,751	\$2,340,710	\$5,120,444
수급인 18세 도달로부터 5년간: 연액 \$35,000의 정기금	\$70,623	\$175,000	\$175,000
수급인 23세 도달시 일시금 \$150,000	\$49,246	\$150,000	\$150,000
수급자 25세 도달시 일시금 \$250,000	\$70,563	\$250,000	\$250,000
수급자 27세 도달시 일시금 \$500,000	\$121,329	\$500,000	\$500,000
수급자 30세 도달시 일시금 \$1,000,000	\$191,495	\$1,000,000	\$1,000,000
합 계	\$1,000,000	\$4,736,710	\$7,516,444

(3)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Structured Settlements 사업의 특성상 연금수급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지급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의 지불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혹여 생명보험회사가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피해자는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을 구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연금의 소유권이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손해보험회사에 귀속되므로 피해자는 여타의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⁷²⁾ 미국에서 Structured Settlements 사업에 참여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재무적 요건보

71) 뉴욕주의 Marshall Turner 변호사가 제공한 내용을 吉本智信·佐野 誠, 「生存余命と定期金賠償」, 自動車保險ジャーナル, 2005, 140頁에서 재인용

72) 이하 호주의 동향에 대해서는 조재린·이기형·정인영,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보험연구원, 2012. 8, 49면

다 더욱더 까다로운 고도의 재무건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표- 3> 연금보험회사로서의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심사 조건⁷³⁾

신용평가회사	등급
A.M. Best's	Rating of A+ and financial size VIII or higher
Moody's	Rating of Aa3 or higher
Standard & poor's	AA- or higher

(4) 면세의 경위와 특징

1970년대 후반 즈음 미국에서는 여러 원인의 재해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 다수의 피해자가 그 일시금을 조기에 탕진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겪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따른 문제점에 착안하여 의회에서는 소득세의 면세를 일시배상금에서 정기배상금에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⁷⁴⁾ 기존의 미국국내세법(Internal Revenue Code)⁷⁵⁾을 수정하는 '1982년 정기금배상에 관한 법률(The Periodic Payment Settlement Act of 1982)⁷⁶⁾을 제정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Structured Settlements에 의한 보험금을 면세조치 하였다. 원래 미국 국내세법 제 104조(a)의 (1)⁷⁷⁾에서는 '업무에 의한 상해 또는 질병에 의한 노동자재해보상

73) Michael J. Pickett, Structured Settlements Guidelines의 내용을 佐野 誠, “生命保険ビジネスとして Structured Settlements”, 生命保険論集 第159号, 2007. 6

74) Gregg D. Polsky & Brant J. Hellwig, “TAXING STRUCTURED SETTLEMENTS”,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 [51:39], Issue 1, January 2010, p. 46

75) TITLE 26-INTERNAL REVENUE CODE 01/22/02
<http://www.constitution.org/tax/us-ic/irc/irc_jan2002.pdf>

76) Summary of H.R. 5470 (“The Periodic Payment Settlement Act of 1982”) : as passed by the House and the Senate. <<https://www.jct.gov/publications.html?func=startdown&id=2772>>

77) Sec. 104. Compensation for injuries or sickness

(a) In general Except in the case of amounts attributable to (and not in excess of) deductions allowed under section 213 (relating to medical, etc., expenses) for any prior taxable year, gross income does not include -

(1) amounts received under workmen's compensation acts as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ies or sickness; <http://www.constitution.org/tax/us-ic/irc/irc_jan2002.pdf>

(Compensation for injuries or sickness)에 대하여 세법상의 규정을 정하고 있었으나,⁷⁸⁾ '1982년 정기금배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79년에 제정된 미국 국내세법 제104조(a)의 (2)을 개정하였다. 그로 인해 일시금배상 또는 정기금배상에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의한 인신상해 또는 질병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⁷⁹⁾ 개정내용을 보면, 국내세법 제104(a)의 (2)⁸⁰⁾의 조문을 수정하여 "판결 또는 화해를 묻지 않는다.(whether by suit or agreement)"에서 "판결 또는 화해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일시금인지 정기금지급인지에 관계없이(whether by suit or agreement and whether as lump sums or as periodic payments)"로 수정하여 Structured Settlements계약에 의해 피해자가 받는 정기금(연금)에 대한 면세조치가 명확해졌다. 또한 동법 제130조에서는 채무인수인이 가해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적격채무인수인(qualified assignment) 및 적격자산(qualified funding asse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본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즉 채무인수인이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채무인수의 계약에 기초한 수취일 것', '적격자산의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가조항을 삽입하였다.(제130조(a)항)⁸¹⁾ 여기서 말하는 '적격채무인수인'이 되기 위해서는 ① 인신상해에 대한 정기금배상채무의 인수일 것이며, 그 채무내용이 확정되고 변경되어서는 안 될 것, ② 인수인의 책임이 원채무자의 배상책임보다 많아서는 안 될 것, ③ 피해자가 수취하는 정기금(연금)이 비과세일 것 등의 세부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130조(c)항)⁸²⁾ 또한 적격자산에 대해서는 연금계약 또는 재무

78) Gregg D. Polsky & Brant J. Hellwig, "TAXING STRUCTURED SETTLEMENTS",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 [51:39], Issue 1, January 2010, p. 46

79) Gregg D. Polsky & Brant J. Hellwig, "TAXING STRUCTURED SETTLEMENTS",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 [51:39], Issue 1, January 2010, p. 47

80) (2) the amount of any damages (other than punitive damages) received (whether by suit or agreement and whether as lump sums or as periodic payments) on account of personal physical injuries or physical sickness;
<http://www.constitution.org/tax/us-ic/irc/irc_jan2002.pdf>

81) Sec. 130. Certain personal injury liability assignments

(a) In general

Any amount received for agreeing to a qualified assignment shall not be included in gross income to the extent that such amount does not exceed the aggregate cost of any qualified funding assets.
<http://www.constitution.org/tax/us-ic/irc/irc_jan2002.pdf>

성증권 등의 연방채무(any obligation of the United States)를 말하는 것으로 이 역시 부가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130조(d)항)⁸³⁾), ① 적격채무인수인이 정기금배상에 사용할 것, ② 연금 등의 지급기간과 적격채무인수인의 정기금배상과의 기간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가 있을 것, ③ 연금 등의 지급금액은 정기금채무의 금액보다 많아서는 안 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세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Structured Settlements의 피해자에 대한 연금과세와 채무인수인에 대한 과세문제가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정기금지

82) (c) Qualified assignment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qualified assignment" means any assignment of a liability to make periodic payments as damages (whether by suit or agreement), or as compensation under any workmen's compensation act, on account of personal injury or sickness (in a case involving physical injury or physical sickness) -

(1) if the assignee assumes such liability from a person who is a party to the suit or agreement, or the workmen's compensation claim, and

(2) if -

(A) such periodic payments are fixed and determinable as to amount and time of payment,

(B) such periodic payments cannot be accelerated, deferred, increased, or decreased by the recipient of such payments,

(C) the assignee's obligation on account of the personal injuries or sickness is no greater than the obligation of the person who assigned the liability, and

(D) such periodic payments are excludable from the gross income of the recipient under paragraph (1) or (2) of section 104(a).

The determination for purposes of this chapter of when the recipient is treated as having received any payment with respect to which there has been a qualified assignment shall be made without regard to any provision of such assignment which grants the recipient rights as a creditor greater than those of a general creditor.

<http://www.constitution.org/tax/us-ic/irc/irc_jan2002.pdf>

83) (d) Qualified funding asset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term "qualified funding asset" means any annuity contract issued by a company licensed to do business as an insurance company under the laws of any State, or any obligation of the United States, if -

(1) such annuity contract or obligation is used by the assignee to fund periodic payments under any qualified assignment,

(2) the periods of the payments under the annuity contract or obligation are reasonably related to the periodic payments under the qualified assignment, and the amount of any such payment under the contract or obligation does not exceed the periodic payment to which it relates,

(3) such annuity contract or obligation is designated by the taxpayer (in such manner as the Secretary shall by regulations prescribe) as being taken into account under this section with respect to such qualified assignment, and

(4) such annuity contract or obligation is purchased by the taxpayer not more than 6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qualified assignment and not later than 60 days after the date of such assignment. <http://www.constitution.org/tax/us-ic/irc/irc_jan2002.pdf>

금의 담보자산으로서(즉 적격자산으로서) 연금계약 뿐만 아니라 연방채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본점을 미국내에 두지 않은 채무인수회사가 미국 국적을 사용하여 Structured Settlement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는 것은 흔하지 않다고 한다.⁸⁴⁾

4. 최근의 동향

(1) 연금수급권의 매매마켓의 출현

1980년대 후반부터는 Structured Settlement에 의해 연금을 수급 받는 피해자에게 지급 받고 있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화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연금수급권매매회사(Factoring Company; 이하 팩토링회사)가 생겨났다. Structured Settlement의 수취인 중에서는 당사자 또는 가족의 의료비용, 주택 개수 또는 구입, 교육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어느 일정시점에서는 당초 Structured Settlement의 계약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된다. 정기금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ructured Settlement의 수취인은 팩토링회사에 장래의 수취분(연금)을 매각(양도)하여 일시금으로 수령받게 된다.⁸⁵⁾ 이렇게 수취인의 권리(연금수급권)를 팩토링회사에 양도하여 정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하는 거래를 ‘팩토링거래(Structured Settlement Factoring Transactions)’라 한다.⁸⁶⁾

2000년대 초반까지 수취인의 연금수급권을 매우 낮은 가격으로 구입해 다시 펀드화 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남기는 팩토링회사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⁸⁷⁾ 팩토링사업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매수회사의 과도한 이윤구조를 문제 삼을 수 있다.⁸⁸⁾ 팩토링회사는 수표사회라 할 수

84) 佐野 誠, “人身事故損害賠償における定期金拂いについての一考察”, 『保險學雜誌』 第570号, 2000. 9, 146頁

85) 李洪茂, “アメリカにおける人身事故の損害賠償金としてのストラクチャード・セトルメント”, 『保險學保險法學の課題と展望—大谷孝一博士古稀記念』, 成文堂, 2011.12, 811頁

86) 팩토링회사들은 미국 내 거리 및 버스광고 등에 또는 TV나 YouTube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한다. “Structured Settlement Need Cash Now”라는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AWi9RXYtOQ>> 2015. 6. 3 검색

87) NSSTA에 따른 재판기록의 조사에 의하면 Factoring Companies가 지불한 금액은 장래 지급받게되는 정기연금의 현재가치로 49%에 지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고 한다. 佐野 誠, “人身事故損害賠償における定期金拂いについての一考察”, 『保險學雜誌』 第570号, 2000. 9, 147頁

있는 미국에서만 가능한 일이지만, 연금수급자에게 주소의 변경을 지시하고 수표의 배송처를 우체국의 신용구좌나 사서함을 은행의 임금구좌로 하여 연금수급자로부터 날인 받은 위임장을 사용하여 수취인의 연금을 수급받는 수법을 사용하였다.⁸⁹⁾ 이러한 팩토링사업은 당초 일시금지급의 낭비를 막고자 시행했던 면세정책과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팩토링회사는 수취인에게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연금계약을 매입하려 했고 현금 유동성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 곤궁한 수취인은 그러한 부당거래에 동의할 수 밖에 없게 현실이다.

Structured Settlement 계약에 의한 연금수급자의 대부분은 신체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재해사고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활동 영위하기 어렵다. 결국 팩토링거래로 인해 연금수급권을 상실한 피해자는 국가가 생활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면세에 의한 세금보조라는 원래의 면세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팩토링거래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01년에 국내세법 제5891조 HR 2884가 의회를 통과하고 이에 대해, 2002년 1월 23일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그 해 7월 1일 발효되었다.⁹⁰⁾ 이 법안에는 ‘생보방식배상연금 취급(Treatment of Certain Structured Settlement)’에 관해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생보방식배상연금 취급’은 미국생보방식배상연금협회(National Structured Settlements Trade Association, NSSTA)와 매매회사의 단체인 ‘전미생보방식배상연금매매협회(Natioanl Association of Settlement Purchasers, NASP)’의 정치적 교섭에 의해 생긴 합의라 할 수 있다. 당시의 합의내용은 신체 장애자 단체, 원고 측 변호사, 보험업계 등의 강한지지를 얻게 되었고 결국 최종 입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양 단체의 합의에는 법적인 구속력을 동반하는 ‘생보방식배상연금보호모델법’(Model State Structured Settlement Protection

88) 예를 들면, 6세의 아이의 아버지인 35세의 남성이 14년간 받을 예정인 총액 10만 6385달러의 연금수급권을 3만 1711달러에 매각하고 있다. Daniel W. Hindert, Joseph Julnes dehner, & Patrick J. Hindert, “Structured Settlements and Periodical Payment Judgments”, Law Journal Press (2013), § 16-02-[2] [a]

89) Daniel W. Hindert, Joseph Julnes dehner, & Patrick J. Hindert, “Structured Settlements and Periodical Payment Judgments”, Law Journal Press (2013), § 16-02-[2] [c]

90)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이른바 ‘9.11 사건’에 의한 희생자세금구제법이 의회를 통과하고 2002년 1월 23일 조지부시대통령은 이에 서명하였다. -테러희생자세금구제법(The Victims of Terrorism Tax Relief Act of 2001)

Act)의 지지 협정도 포함되어 있었다.⁹¹⁾ 그에 따라 국내세법 제 5891 (a)에 의해 법원의 승인을 얻지 않은 팩토링거래에 대해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거래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자에게 할인액(Factoring Discount)의 40%의 할인세(Factoring Transaction Tax)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팩토링회사가 그러한 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팩토링거래에 대해 각 주주의 적격한 법률에 기초하여 각 주주법원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⁹²⁾ 주주 법원의 승인여부는 ‘생보방식배상연금보호모델법’을 기초로 각 주주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된다.⁹³⁾ 해당 팩토링거래가 수취인과 그 부양가족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에 조력하는 것이며, 어떠한 법률에도 위법하지 않아야만 법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팩토링회사가 연금수급권자들에게 자사의 매각조건(할인율)을 홍보하여 계약 체결까지 이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초의 접촉 시부터 3개월 내에 이뤄진다. 일부업체는 몇 주만(보통3~6주간)에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수일 내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마케팅을 하기도 한다.⁹⁴⁾ 초창기 팩토링업체는 소송비용이나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비교적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사업초기인 1990년대

91) Daniel W. Hindert, Joseph Julnes dehner, & Patrick J. Hindert, “Structured Settlements and Periodical Payment Judgments”, Law Journal Press (2013), § 16-03-[1]

92) 미국의 다수의 주주에서는 노동자재해관련법률에서 보상금의 양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팩토링거래에 노동자 재해와 관련된 ‘Structured Settlement’가 포함될 경우, 별도의 노동자 재해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李洪茂, “アメリカにおける人身事故の損害賠償金としてのストラクチャード・セトルメント”, 『保險學保險法學の課題と展望—大谷孝一博士古稀記念』, 成文堂, 2011.12, 813頁

93) 대부분의 주주의 ‘생보방식배상연금보호법’에서는 해당 팩토링거래가 매각자의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주주 법원에서는 개별사정에 기초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 주주에 따라서는 자금의 용도, 수취인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능력, 매각자의 장래 의료의 필요성과 같은 요소로 판단한다. 재판소는 이 ‘최선의 이익’의 기준은, 재정적인 곤경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결해왔다. 따라서 주택의 구입, 신규 사업의 개시,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같이 매각자에게 새로운 기회 부여, 가족의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채의 청산과 같은 재난의 회피의 경우는 그 팩토링거래가 최선의 이익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많은 주주의 ‘생보방식배상연금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① 거래에 관해 중요한 사항은 양도계약 전에 매각자에게 개시해야 한다. ② 특정 이해관계자에의 통지. ③ 양도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경고 ④ 양도가 매각자의 최선의 이익인 및 모든 부양가족의 복지와 부양을 고려하는 것의 기준을 포함한 재판소의 양도승인 등을 정하고 있다. 李洪茂, “アメリカにおける人身事故の損害賠償金としてのストラクチャード・セトルメント”, 『保險學保險法學の課題と展望—大谷孝一博士古稀記念』, 成文堂, 2011. 12, 814-815頁

94) Jeremy Babener, “Justifying the Structured Settlement Tax Subsidy ; The use of Lump Sum Settlement Monies”, New York University Journal and Business, Vol.6, 2009, P.33

팩토링거래의 할인율은 30% 이상 될 정도로 연금수급권을 매우 저가로 구입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각 주州 및 미연방의 ‘생보방식배상연금보호모델법’이 제정됨에 따라 팩토링회사들의 할인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져 2000년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16% ~ 18%까지 인하 되었다. 업체 간의 할인율 경쟁이 지속되고, 2008년에 금융위기까지 겹치자 할인율이 8% ~ 9%까지 인하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할인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⁵⁾

(2) Executive Life사(California, New York)의 파산과 정기금배상의 영향

미국에서 생명보험회사가 부실경영으로 판단되면 각 주州의 보험감독관청의 관리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청산된다.⁹⁶⁾ Executive Life Insurance사⁹⁷⁾의 계열회사였던 ‘Executive Life Insurance of California’, (이하, ELIC)와 ‘Executive Life of New York’, (이하, ELNY)가 파산하고, 그 결과 Structured Settlement 사업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양사의 합계로 계약자나 종업원, 투자자 등 관계자 50만명 이상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13,500명(ELIC 5500명, ELNY 8000명)⁹⁸⁾의 Structured Settlement 연금수급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1991년 최초 부실판정 이후 2013년에까지 최종 22년간 Structured Settlement의 적격 채무인수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는지 재검토되기도 하고, 연금수급자에게 감액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심지어 원래의 배상채무자인 손해보험회사에 책임의 부담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ELIC는 1993년 신생 보험회사에 이관된 이후에도 여러 부침을 반복하였고,⁹⁹⁾ ELNY는 1992년

95) 李洪茂, “アメリカにおける人身事故の損害賠償金としてのストラクチャード・セトルメント”, 「保険學保險法學の課題と展望—大谷孝一博士古稀記念」, 成文堂, 2011.12, 816-817頁

96) 1978년 NAIC은 「Insurance Rehabilitation and Liquidation Model Act」를 보급하고, 많은 주에서 채용하였다. 2005년 그 개정판인 「Receivership Model Act」가 발표되었다.

97) 1986년부터 87년에는 총자산은 164억 달러까지 성장하고, 2사의 합계로 전미 15위가 되었고, 당시 신용등급은 Standard & Poor's 기준으로 AAA, A. M. Best's사의 등급은 A 였다고 한다. Daniel W. Hindert, Joseph Julnes dehner, & Patrick J. Hindert, “Structured Settlements and Periodical Payment Judgments”, Law Journal Press (2013), § 3-05-[11]

98) Daniel W. Hindert, Joseph Julnes dehner, & Patrick J. Hindert, “Structured Settlements and Periodical Payment Judgments”, Law Journal Press (2013), § 3-05-[11]

99) Daniel W. Hindert, Joseph Julnes dehner, & Patrick J. Hindert, “Structured Settlements and Periodical Payment Judgments”, Law Journal Press (2013), § 3-05-[12]

Structured Settlement 이외의 계약은 Metlife life insurance사로 이관되어 약 8000 명의 Structured Settlement 연금수급자에 연금을 지급하는 회사로서 존속해 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에 대처하지 못하고 2013년 8월 8일 최종 청산에 이르게 된다. 이후 뉴욕주의 지원과 과 더불어 주요 생명보험회사에 의한 추가적인 금융지원도 이뤄졌지만 결국 1500명 이상의 Structured Settlement 연금수급자가 40%~60%의 감액조치를 받게 되었다.¹⁰⁰⁾ Structured Settlement 수급자는 노동능력의 상실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환자들로, 연금수입이 경제적 수입의 전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의 파산은 연금수급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Structured Settlement 상품을 취급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V. 마치며

본고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일시배상금이라는 배상 방식은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정기금배상의 방식보다 가해자 피해자간의 실리에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하 결론에 갈음하여, 정기금배상의 주요국의 법체계를 우리와 비교하고, 일시금배상의 대안으로 소개한 미국식의 정기금배상 방식의 일환인 Structured Settlement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1. 정기금배상방식의 주요국 법체계와 우리법의 위치

먼저 일본의 정기금배상과 관련된 법 규정과 실무동향을 살펴봤을 때, 대체적으로 원고 측에서는 일시금배상방식으로 청구하고, 법원도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금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많다는 것이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일본은 원고의 일시금배상 청구를 법원의 재량으로 정기금배상으로 명할 수 없다는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하급심 법원은 물론이고 일선 보험회사

100) Daniel W. Hindert, Joseph Julnes dehner, & Patrick J. Hindert, "Structured Settlements and Periodical Payment Judgments", Law Journal Press (2013), § 3-05-[13]

의 보상실무에 있어서도 정기금배상에 관한 판결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정기금배상 변경의 소가 신설되면서 정기금배상에 대한 관심과 판결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의 변경이 있기까지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바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독일은 정기금배상에 관해 독일민법(BGB)과 민사소송법(ZPO)에 자세한 규정을 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향후에 정기금배상에 관한 법 개정을 함에 있어서 참고하여야 할 국가이다. 그러나 독일 역시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제도상의 문제가 수반된다. 원칙적으로 독일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우리와 일본과 같은 금전배상원칙이 아니라 원상회복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피해자의 일실향익에 있어서 무능력자(아이, 배우자 등)의 부양확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대륙법체계의 국가라 하지만 우리와는 불법행위 법리 구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법률상 자세하게 정기금배상방식에 대해 정하고 있음에도 독일의 실무례에 있어서 정기금배상보다는 일시금배상이 선호되고 있는 점이었다. 이러한 연유는 손해배상의 피해자인 원고 측에서 일시금배상 방식의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정기금배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판례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었고, 법률상의 규정이 없어도 '변경의 소가 인정되는 등 판례법상 다양하게 정기금배상 방식이 운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특별법상에 물가연동제 방식 도입하기도 하여 정기금배상에 대한 다양한 운용례를 보여주고 있다.

독일과는 다른 영미법체계의 영국·호주·캐나다 등에서는 일찍이 일시금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생명보험회사를 활용하는 미국식의 Structured Settlement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동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일시금배상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국의 정기금배상의 법체계와 우리법의 위치를 조망해 볼 때, 일본법은 정기금배상에 대한 민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법체계, 법원에서 원고의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법제도 등은 우리와는 다른 양상이라 할 것이지만, 금전배상의 원칙에 입각한 손해배상의 법리 및 자동차보험 등의 보상구조가 매우 유사함에 따라 비슷한 실무동향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정기금배상에 관하여 우리의 민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에 많은 롤 모델을 제시한 국가

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는 독일과 같은 원상회복주의 법리를 채용하지 않았고 금전배상주의의 입각하여 일시금지급방식을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례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오히려 정기금배상에 대해서는 독일보다 프랑스가 우리와 유사한 실무적 동향을 보이고 있다. 영국미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는 일시금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일시금배상을 명하고 있으나,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제도를 이용하는 Structured Settlement 라는 제도와 혼용하여 피해자의 보상에 있어서 정기금배상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점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이라 할 것이다.

2. 미국식의 Structured Settlement 제도에 대한 평가

미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손해배상의 방식인 Structured Settlement는 피해자 보상금의 조기소진의 문제로 손해배상금을 종신 연금화 할 필요가 있게되자 국가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면서 그 Structured Settlement상품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현재는 교통사고나 근로자재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중증후유장애자의 배상문제부터 출산시 의료 과실로 인한 뇌손상에 의한 뇌성소아 마비 등의 배상문제 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건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¹⁰¹⁾ 이 제도가 대중화됨에는 일시배상금에서 정기금배상까지 확대된 세제혜택과 생명보험업계나 이해관계자 및 중개자들의 노력에 기인한 결과라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Structured Settlement 운용 초기에는 당초에 상품을 기획했던 것과는 다른 부작용 역시 발생하였다.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팩토링거래(연금수급권매매거래)가 출현한 것이다. Structured Settlement 거래계약의 체결로 수취인이 지급받게 되는 확정적인 연금은 현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장래 연금수급권을 매각해서 현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팩토링거래가 자생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각한 연금수급권은 수취인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혔고 이는 당초 의회가 의도했던 면세혜택의 목적과는 다른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 이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팩토링거래에 대해 할인액

101) Singer Richard B & Schmidt Craig J. "Structured settlement annuities, part 2: mortality experience 1967 - 95 and the estimation of life expectancy in the presence of excess mortality",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 2000. p 133

의 40%를 거래세로 부과토록 하여 악덕 팩토링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지만 이러한 피해의 내용은 Structured Settlement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정도로 관련업계에 큰 문제를 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3년 8월 최종 파산된 ELNY사의 사례를 되돌아 볼 때, 고도의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상품판매 면허를 부여하더라도 연금지급기간이 짧게는 10년~20년 길게는 40년~60년에 이르는 매우 장기적인 보험금지급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Structured Settlement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 파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연금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Structured Settlement 산업은 생명보험회사와 채무인수회사, 중개자에게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마켓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계리사협회는 Structured Settlement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평균여명에 대한 데이터, 자금운용 전망 등 보험 수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집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 생명보험회사들 역시 Structured Settlement 상품 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다양한 케이스를 분석하기도 하는 등 세심한 언더라이팅 기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미국의 Structured Settlement 관련 산업은 지금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Structured Settlement 제도 도입논의와 시사점

미국식의 Structured Settlement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전제해야 할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정기금배상에 관한 세법상의 정비(개정)를 선행해야 한다. 우리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면¹⁰²⁾ 일시금배상이 아닌 정기금배상 형태의 보험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우리 소득세법상에 미국의 IRC 규정과 같은 “정기금형식의 지급의 경우에도 일시금과 같은 취급을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법개정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 두 번째로 금융당국은 Structured Settlement 상품판매를 인가할 때, 생명보험회사에 고도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해야 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컨대 Standard & Poor's 사의 등급을 기준으로 최소 AA- 정도의 높은 등급의 충족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1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4호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생명보험회사는 이러한 재무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가 많지 않다. 외국계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제외하고는 국내 대형 생명보험회사 3사는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¹⁰³⁾ 따라서 재무건전성 충족요건에 있어서는 미국과 같은 고도의 재무건전성을 사업요건으로 하되, 별도의 우리방식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Structured Settlement 상품을 운용하는 기관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운용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방식을 거론할 수 있겠다. ① 미국에서와 같이 손해보험회사가 채무인수회사에 배상 채무를 양도하고 생명보험회사가 채무인수회사와 연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 ② 생명보험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을 계정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손해보험회사가 연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¹⁰⁴⁾, ③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기관을 이용하는 방식¹⁰⁵⁾ 또한 고려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손해배상에서 일시금배상방식의 여러 문제점을 착안하여 이에 대한 비판과 정기금배상방식의 합리성을 역설하였고 미국식의 정기금배상방식인 Structured Settlement를 소개 및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필자가 보는 관점은 미국의 Structured Settlement를 도입하였을 때, 원고의 일시금 청구를 처분권주의에 입각하여 정기금배상의 판결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¹⁰⁶⁾의

103) 2013년 Moody's 기준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신용등급을 부여 받지 못하고 있고 교보생명만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A2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들 신용평가회사가 국내 주요 생보사를 저평가 하는 이유는 ①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산하의 농협생명이라는 새로운 경쟁업체가 등장했고, ②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보험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③ 중소 생명보험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등을 꼽았다.

<https://m.moody.com/mt/un-tt-media/https%253A%252F%252Fwww.moody.com%252Fresearchdocumentcontentpage.aspx%253Fdocid%253DPBC_150647/PBC_150647.pdf>

104) 이에 대해서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견해도 있다. 조재탄·이기형·정인영,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보험연구원, 2012. 8. 80면

105) 일찍이 일본의 藤村和未 교수는 자동차사고 분쟁관련 ADR기관인 교통사고분쟁처리센터를 이용하는 방식을 藤村和未, “定期金賠償(交通災害における損害賠償保険および社會保障)”, 保險毎日新聞社, 61頁, 河邊義典판사는 우리의 보험개발원과 같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인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河邊義典, “交通事故賠償の實務と展望”, 「新しい交通賠償論の胎動」, 東京三弁護士會交通事故處理委員會, 2002, 31頁, 이에 대해서는 吉本智信·佐野 誠, 「生存余命と定期金賠償」, 自動車保險ジャーナル, 2005, 152頁에서 재인용

106) 이에 대해서는 勅使川原 和彦, “定期金賠償請求訴訟と處分權主義”, 「早稻田法學」 第81卷 第4号, 早稻田大學法學會, 2006, 80-81頁

대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상금(보험금)의 조기소진이라는 심각한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파악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시금배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Structured Settlement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2
- 김기선, 「한국채권법각칙」, 박영사, 1986
-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 (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 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 산재)」,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5
- 이연갑, “정기금배상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56호, 한국민사법학회, 2011. 12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보험연구원, 2012. 8
- 최은순, “신체사고에서의 정기금 배상” 「외법논집」 제3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8
- Daniel W. Hindert, Joseph Julnes dehner, & Patrick J. Hindert, “Structured Settlements and Periodical Payment Judgments”, Law Journal Press, 2013
- Gregg D. Polsky & Brant J. Hellwig, “TAXING STRUCTURED SETTLEMENTS”, Boston College Law Review Vol. [51:39], Issue 1, January 2010
- Jeremy, Babener, “Justifying the Structured Settlement Tax Subsidy: The Use of Lump Sum Settlement Monies”, New York University Journal of Law & Business, Vol. 6, Issue 1, Fall 2009
- Jeremy Babener, “Structured Settlements and Single-claimant Qualified Settlement Funds : Regulating in Accordance with Structured Settlements History”,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2010
- The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 Structured Settlement Working Party, 15 Oct. 2000
- Musielak/Foerste, ZPO 3. Aufl., 2002
- MünchKommBGB/Wagner, 4. Aufl., 2004
- Palandt/Thomas, BGB 62. Aufl., 2003

- 李洪茂, “アメリカにおける人身事故の損害賠償金としてのストラクチャード・セトルメント”, 「保険學保險法學の課題と展望—大谷孝一博士古稀記念」, 成文堂, 2011. 12
- 川原和彦, “定期金賠償請求訴訟と處分權主義”, 「早稻田法學」 第81卷 第4号, 早稻田大學法學會, 2006
- 佐野 誠, “人身事故損害賠償における定期金拂いについての一考察”, 「保險學雜誌」 第570号, 2000. 9
- 佐野 誠, “定期金賠償の現状と課題”, 「生存余命と定期金賠償」, 自動車保險ジャーナル, 2005
- 佐野 誠, “生命保險ビジネスとしてStructured Settlements”, 生命保險論集 第159号, 2007. 6
- 新谷昌弘, “米國の定期金賠償賠償”, 「生命保險經營」, 第82卷 第6号, 2014.11
- 吉澤卓哉, “無能力者の扶養確保のための定期金賠償”, 「損害保險研究」 57卷 1号,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1995. 5
- 吉本智信・佐野 誠, 「生存余命と定期金賠償」, 自動車保險ジャーナル, 2005

<Abstract>

Discussing the Conversion of Lump Sum Damages to Annuity Insurance - Focusing on Structured Settlement in USA -

Byung Kyu Han

Lump sum compensation is generally accepted for the payment of damages in Korea according to its tort law. However, this lump sum compensation can be unreasonable compared to periodic payment due to its uncertainty in estimation of future damages. It leads to an under-estimation or an over-estimation of compensation which is awarded to victim, therefore does not accord with original intention and purpose of compensation system for damages, which is fair and right apportionment of loss. This problem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comparing other nations' legal practices. In Korea and Japan, the plaintiff would mostly claim damages in lump sum and the court would accept the claim as such, ruling the compensation to be paid accordingly. In Germany, a detailed regulations about periodic payment of damages are prescribed in BGB and in ZPO, however, lump sum compensation is preferred to periodic payment in practice. Unlike in Korea, Japan and Germany, a more diversified periodic payment options are available by precedents in France. Especially in the case of traffic accidents, index-linked compensation is adopted by a special law.

This article introduces structured settlement and reviews its application to korean legal system. Structured settlement is another type of periodic payment that is different from other periodic payment methods in continental law. In structured settlement, a company (most of time, a subsidiary of life insurance company) would take over the capital (normally, benefits from an insurance company) and it would eventually provide annuity to victims. The system could have prevailed in USA because only the life insurance

companies of financial soundness were allowed to run such business and because it was supported by tax-free policy which excluded such compensation from taxation (that is, an income tax exemption). Not only can the system overcome the problems of lump sum compensation (the problem of early exhaustion and the problem of uncertainty in estimation), but also it can enable a various pension plans which could reflect inflation and meet the plans of the victim or his/her family by using highly developed underwriting and other financial skills. It is time to break from lump sum compensation system which stirs up many different problems. And the structured settlement system in USA has many implications for such an attempt.

Key Words : Lump Sum, Periodic Payment, Structured Settlement, Structured Settlement Factoring Transactions, Model State Structured Settlement Protection Act